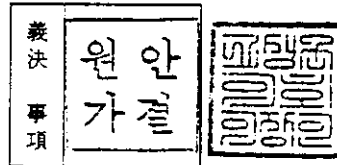


議案番號	第 206 號
議決 年月日	1995. 5. 27. (第 33 回)



固城郡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5. 10.

#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	276
번호	

제출년월일 : 1995 . 5 . 10.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1. 제안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사업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2조)

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수 있다. (안 제3조)

다.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함. (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안 제8조)

##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